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6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김재진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호, 김원중,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윤종복,
이성배, 이영실, 이은림,
이종태, 임춘대, 최민규,
허 훈, 황철규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할 사항을 안전관리 조직 구성, 안전점검 방법 및 주기, 재난사고 조치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 나.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서울특별시장·자치구청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자치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 조직 구성 및 운영
2.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3.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4. 재난·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안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사무위임(제17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1. 자연휴양림의 조성 및 관리 등		구청장, 동부·중부·서부 ·북부공원여가센 터소장, 서울대공원장, 서울식물원장
가. 자연휴양림의 타당성 평가 및 지정 신청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1조의2	
나. 자연휴양림의 조성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 같은 법 제14조	
다. 자연휴양림 조성(시설 설치) 및 관리	◦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제21조의5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숲길관리청”이란 숲길을 관리하는 <u>서울특별시·자치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자치구청장</u> ----- --.
제3조(책무)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u> 은 법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산림문화·휴양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u>시장</u> ----- ----- ----- ----- ----- --.
제8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생략) ② <u>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	제8조(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u>자연휴양림의 시설물·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 조직 구성 및 운영</u> 2. <u>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u>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
휴양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안
전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
7조의2에 따른다.

훈련

3.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4. 재난·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
안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관
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
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안전관리 조직 구성, 안전점검 방법 및 주기, 재난사고 조치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